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28 | 2026.4.20 (2026.4.13~2026.4.19)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국무조정실>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차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립하고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재정경제부>는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물품 운송경로 등이 변경되어 운임이 통상적 운임보다 현저히 증가할 경우 관세 과세가격 산정시 통상적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산지에 설치되는 변전소에 대하여 조경 기준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지지설비를 건축설비의 범주에 포함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재산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기업의 재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증 유효기간을 주요 인증제도 수준인 4년으로 확대하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조정전담번호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보완 근거 및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의 심사기간 불산입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의 선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원칙을 마련하고,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제재 감경근거를 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의원 등 12인)**」,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를 추가해 세액공제율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국가계약 분쟁의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의원 등 16인)**」,

국가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된 국가산업단지 입주 여부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과정에서 성별 편향 등을 금지하도록 기본원칙에 명시하고,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영향평가에 성별 편향 등의 발생여부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전시문화산업을 독립적으로 규정하여 그 창의적 특성을 반영하고 전시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기현의원 등 10인)**」,

비촉목표 등을 포함한 전략광물 비촉계획 수립, 민관공동비축, 세제지원 등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의 지원,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안(배준영의원 등 11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지도’를 통하여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의원 등 10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분포 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기간제 근로자에게 동일 직무 정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의원 등 20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관과의 협의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관련한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게 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6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4.23. 안건 심의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과방위>, <농해수>, <국토위>, <기후노동위> 등에서 법안 심사가 실시됩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국무조정실) 7
- 「공공부분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고용노동부)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1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1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1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예산처) 1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정경제부) 13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13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4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지식재산처) 1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15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16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1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2인) 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1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6인) 1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8인) 1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19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2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20
-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기현의원 등 10인) 20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3인) 21

-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안(배준영의원 등 11인) 2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22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1인) 2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20인) 23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20인) 23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2인) 2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4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4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0인) 25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6인) 25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 26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2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2026년 정기주주총회 리뷰] 제1호 : 개정상법에 따른 정관 개정 — 소수주주의 이사회 진입 확대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 [방송통신(TMT)] 정부, 유출사고 예방 위해 ISMS-ISMS-P 인증제도 전면 개편
- [자본시장] 정부, 모자회사 중복상장에 ‘원칙금지’ 기조 도입 - 미국의 중복상장 규율 및 Pre-IPO 투자 실무와의 비교
- [지식재산권] AI 가상인물 표시의무를 도입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 행정 예고
- [공정거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과 시사점 - 하도급거래 전 과정 규율 강화와 실무상 영향 -
- [방송통신(TMT)]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노동] 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발표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4. 1. - 2026. 4. 14.)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 위원장 격상(국무총리 → 대통령), 민간 부위원장 신설, 규모 확대(최대 25 → 50명) -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 보고 · 논의 - 5극3특 지역균형성장 실현 위한 ‘메가특구’, 규제특례 · 정책패키지 파격 지원 → 메가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 효과 극대화	2026-04-15
-------	---	------------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4.15(수)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었음

국가 차원의 규제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였음. ‘행정규제기본법’ 개정(2.19 시행)을 통해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한편, 민간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민간위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간 중심의 규제합리화 추진 기반을 강화하였음

이번 1차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음

<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 >

① 한 발 앞선 규제합리화

건의에 기반한 개별적·사후적 방식의 규제정비에서 벗어나, 관련 정보와 환경을 사전적으로 분석하여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규제 정비방안을 수립. AI 기반 규제 내비게이터를 통해 규제정보를 통합·분석하고, 국민에게 맞춤형 규제정보를 제공

② 환경변화에 유연한 규제합리화

지금처럼 획일적이고 경직된 방식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산업을 따라가기 어렵기에, 규제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규제합리화를 추진. 핵심산업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규제수준을 다시 점검하고, 꼭 필요한 규제인지 정부가 스스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환

③ 성과 지향 규제합리화

규제 폐지·완화 건수라는 양적 목표에 치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합리화를 통해 어떤 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등 성과를 중심으로 규제정비 목표를 전환. 5극3특 지역균형성장을 구현하는 핵심 성장거점으로 메가특구를 지정

④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합리화

현장수요 중심의 행정 혁신과 국민 눈높이에서의 적극행정을 더욱 확산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합리화를 추진. 창업초기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서류를 50% 이상 감축하고, 행정조사·행정규칙 등 현장에서 규제애로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행정부담을 재정비.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공무원이 규제개선을 주저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를 강화

⑤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합리화

마지막으로, 규제개선 전 과정에 현장소통 기반의 규제합리화를 추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온라인 소통채널, 현장으로 찾아가는 규제합리화 캠프, 경제 협·단체와의 상시 협력을 통해 현장수요 기반으로 과제를 발굴·개선. 이해 갈등으로 오래 지속되어온 현장의 규제애로는 민관이 함께하는 공론화, 숙의를 통해 사회적 타협안을 마련



고용노동부

「공공부분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

-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 불합리한 임금격차 해소
- 고용승계 등 고용안정 강화, 원도급의 하도급 원칙적 제한

2026-04-16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립하고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부분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음

그동안 민간 부문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공부문에서조차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도급금액 삭감, 저임금 및 차별 처우, 고용불안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 심층조사를 실시하였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① 적정 임금 보장 위한 계약제도 개선

공공부분 도급 노동자의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 상향을 추진.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예정가격이 계약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

② 불합리한 임금격차 완화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복지 3종인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에 대해서는 전환 이후에도 계속 총인건비 인상을 산정시 제외되도록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할 예정. 교대제 개편과 복리후생 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발주·도급 노동자 간 동일한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저임금 공공기관 등 임금격차에 대한 단계적 완화 방안도 마련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강화]

안정적인 도급운영과 도급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함. 다만, 일시적 사업이거나 2년 이내 사업 완료가 예정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체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방침. 도급업체 변경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순노무용역과 사내도급 등의 경우 입찰 단계에서 고용승계 약속서를 받고, 계약 단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할 예정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① 원도급사의 하도급 원칙적 제한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도급금액이 감소하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 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 직접수행 원칙을 명시하되, 신기술·전문성 활용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

② 사전 심사제 도입

원도급사는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하도급 필요성, 동일·유사업무 여부, 하도급 예정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기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발주기관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 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책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칭)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는 한편, 경영평가 반영도 함께 추진할 예정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4-24 시행 예정

「담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216호, 2025. 12. 23. 공포, 2026. 4. 24. 시행)되어 담배에 새로 포함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경감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공포, 공포 후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됨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경감 시행일을 합성니코틴 담배가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되는 날인 2026년 4월 24일로 정하는 한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별도로 가감하지 않고 규정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담배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4-14 시행
-------	-------------------------------------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설치 시 자격 요건·부대시설 면적 상한 등 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이축(移築)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며, 주택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요건을 마련하는 한편, 허가 대상 시설의 승계 및 주 용도시설 대비 부대시설의 설치면적 비율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4-14 시행
-------	--------------------	---------------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 조정한도를 폐지하고, 주거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과 동시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예산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4-14 시행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및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 등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각각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0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재정경제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4.08. ~2026.05.18.

최근 중동전쟁으로 물품을 선박으로 운송할 때 종전의 운송경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우회경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이 상승하여 추가적 관세 부담이 발생하는바,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물품 운송경로 등이 변경되어 운임이 통상적 운임보다 현저히 증가할 경우 관세 과세가격 산정시 통상적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적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물품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문의처 :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tel:044-215-4416)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4.16. ~2026.05.26.
-------	--------------------------	-----------------------------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다자녀양육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하는 경우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는 등 공유재산 사용 지원을 강화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통합징수 대상 확대 및 분할납부 시 이행보증 조치가 필요한 연간 사용료 하한액을 규정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3천만원 이하의 소액재산 및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의 수의매각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공유재산 처분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 \(전화: 044-205-3686, 팩스: 044-205-8968\)](tel:044-205-3686)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4.15. ~2026.05.26.
-------	----------------	-----------------------------

산지에 설치되는 변전소 내 조경은 산불 발생 시 산불 확산 경로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화재로 인한 시설 손상은 대규모 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산지 변전소에 대해서는 산불 확산 방지 및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경 기준의 특례를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지에 설치되는 변전소에 대하여 조경 기준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예방과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건축물의 외벽, 옥상, 설비 공간 등에서는 유지관리·점검·보수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유지관리 작업에 필요한 지지설비의 법적 위치가 명확하지 않아 설계 단계에서의 반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지지설비를 건축설비의 범주에 포함하여**, 건축물의 고유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전화: 044-201-3772, 팩스: 044-201-5574\)](tel:044-201-3772)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04.15.
~2026.05.26.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학교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준공 이후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와 해체가 용이한 시설물을 단기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않고도 해당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기존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전화: 044-201-3722, 팩스: 044-201-5657\)](tel:044-201-3722)

지식재산처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4.16.
~2026.05.27.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기업의 재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증 유효기간을 주요 인증제도 수준인 4년으로 확대하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조정전담변호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①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재인증 부담 경감을 위한 인증 유효기간의 확대 (안 제6조의6제4항)
- ②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정전담변호사 도입 근거 마련 (안 제21조제6항)

※ 문의처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과 \(전화: 042-481-5920, 팩스: 042-472-3464\)](tel:042-481-5920)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2026-04-13 발의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신고 또는 심사 요청을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여 120일 이내에 결과를 신고자 또는 요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시행령만을 근거로 자료 보완을 요청하고 그 기간을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법률에 근거 없이 자료 보완을 이유로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보완 근거 및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의 심사기간 불산입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자료 보완요청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11조제9항 및 제11항 등)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2026-04-13 발의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의 신의성실의무,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원칙을 두고 있음. 그러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법령의 실질적인 취지와 목적을 준수하기 보다는 법령에 규정된 문언을 단순 이행하는데 그치고 있어 내부통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적절하게 작동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의 선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원칙을 마련하고,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제재 감경근거를 둬으로써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현행법상 판매규제를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을 규정함 (안 제13조의2 신설)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마련하여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제3항)
-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그 업무범위와 자격,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겸직 금지 등의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신설)
-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16조의5 신설)
- 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그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등을 준수한 사실 또는 준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준수정도에 따라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1조제4항 및 제52조제6항 신설)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2026-04-14 발의

개정 「상법」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예외 사유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됨

그런데 개정 「상법」 시행 이후 다수의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예외사유를 근거로 정관을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없음에도 선제적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음. 특히 그 내용이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 제휴, 사업구조 개편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어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상법」 개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예외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주환원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상법 개정 입법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고자 하려는 것임 (안 제165조의3제5항 신설)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2026-04-15 발의

최근 다양한 금융상품이 증가하고 그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금융소비자가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단체의 설립 및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금융소비자단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소비자단체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금융소비자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등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금융소비자단체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32조의2 신설 및 제34조제3항)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2026-04-17 발의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의 가격재결정명령은 구체적인 시정조치의 유형 중 하나로, 합의에 의해 결정한 가격을 철회하고 새로이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각자 가격을 결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위 가격재결정명령 제도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예규에만 규정되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정부가 가격재결정명령을 통해 개별 기업의 가격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시장 경제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중 하나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을 즉각적으로 시정 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안 제42조제1항)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2026-04-13 발의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 특정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지출에 대하여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전통시장 육성, 대중교통 이용, 문화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소비자의 해당 분야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녹색제품과 같이 제품 사용 전주기에 걸쳐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의 구매 비용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녹색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설비 개선 및 시설 투자를 위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녹색제품(중간재)을 사용하여 완제품을 제작하려는 기업과 녹색제품(완제품)의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가중하여 녹색제품 시장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바, 녹색제품 구매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이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과 구매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하여 주고, 녹색제품을 최종 소비하기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도 소득공제하여 줌으로써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 (안 제24조, 제25조의9 및 제126조의2 등)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2026-04-13 발의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미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할 핵심 저탄소 기술로 부상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연구개발, 실증, 특구 조성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을 추진 중임. 그러나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의 상용화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제조 공급망의 설비투자자 전문기술 확보를 뒷받침할 세제 지원 체계는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현재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핵심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설투자 및 연구·인력개발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중소·중견기업의 선제적 투자 결정을 이끌기에는 제한적이고, 특히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은 높은 초기 설비투자자와 국제적 인증 충족이 필수임에도 수주가 확정되기 전까지 기업이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공급망 내 기업들의 투자가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를 추가해 세액공제율을 실질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요 불확실성 하에서도 설비 확충·기술 고도화·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6인)

2026-04-14 발의

현행법은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국가계약 분쟁조정은 소송 대비 신속·저비용의 분쟁해결로 중소조달기업의 권리구제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조정안 불수용, 불필요한 절차규정 등으로 인하여 조달기업의 권리구제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국가계약 분쟁의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① 국가계약 관련 분쟁의 조정 청구를 위한 이의신청 필요적 전치주의를 폐지하고, 발주기관의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위한 조사권을 부여함 (안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31조의3)
- ②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부당한 특약등에 대한 심사 권한을 부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를 30명으로 확대하여 풀(Pool)제로 운영하는 한편, 소위원회를 두어 소액 조정·재정 신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조, 제31조의4 및 제31조의5)

- ③ 조정·재정의 절차 및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재정신청된 분쟁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8조의2제3항, 제31조 및 제31조의2)
- ④ 조정·재정의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중소조달기업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안 제31조의6)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8인)

2026-04-15 발의

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도시형소공인의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의 뿌리로서 국가 제조업의 경쟁력과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최근 인구고령화와 해외국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인한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음. 그러나 해당 특별법에는 국가 계약에 있어 도시형소공인 제품에 대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어 도시형소공인이 국가의 도움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도시형소공인 생산 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 및 제조업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안 제7조의2 신설)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2026-04-16 발의

현행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및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등을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기여도와 같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익적 요소를 낙찰자 선정 기준으로 추가하여 국가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된 국가산업단지 입주 여부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계약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10조제2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2026-04-13 발의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 윤리원칙,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와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시스템의 개발·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에 따른 편향 및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 재생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과정에서 성별 편향 등을 금지하도록 기본원칙에 명시하고,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영향평가에 성별 편향 등의 발생여부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으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3항, 제27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35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2026-04-13 발의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 등을 국민이 원활하게 시청할 수 있는 권리인 보편적 시청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계권 협상 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또는 지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이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에 독점되어 가입자가 아닌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참여하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통하여 보편적 시청권의 사각지대를 사업자 자율로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계권 협상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액수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안 제76조의3제4항 및 제76조의6 신설)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기현의원 등 10인)

2026-04-14 발의

전시문화산업은 국민의 전시를 통한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창의력이 핵심인 융복합적·지식 집약적 성격의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관련 산업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크며, 국가 및 지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 산업임. 전시수요의 증가 및 전시문화 향유 욕구의 증대로 인한 상설·비상설 전시시설의 확대와 전시공간과 전시콘텐츠 연출기술의 발달로 전시문화산업은 창의적 문화산업으로서 독자적 산업영역으로의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 관련 법령이 없는 상태여서 그 발전이 정체되고 있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전시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가 공공문화 콘텐츠로 정의되었고 그에 따른 전시회 등의 문화상품도 문화산업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음. 그러나 전시 기획, 전시 연출, 제작 등 문화 시설의 전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의 및 그에 따른 대가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전시문화산업과 현재 「전시산업발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전시산업은 서로 다름에도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아 법 적용에서도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시문화산업을 독립적으로 규정하여 그 창의적 특성을 반영하고 전시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전시문화욕구를 충족시키며 국민의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전시문화산업을 글로벌화하고 문화 및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3인)

2026-04-13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벤처기업 육성계획에 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벤처기업제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벤처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2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안(배준영의원 등 11인)

2026-04-15 발의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등 전략광물은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무기 등 국가 핵심 산업 및 자원안보에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국가의 경제·산업·안보 등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 주요국의 전략광물 수출통제 등으로 그 공급망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등 관계 법률은 전략광물의수급 안정화에 필수적인 비축목표, 비축일수, 방출기준 등 전략광물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특정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민간공동비축, 해외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등 해외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광물 확보를 통한 수급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략광물의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에 관한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하여 비축목표 등을 포함한 전략광물 비축계획 수립, 민관공동비축, 세제지원 등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의 지원,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전략광물 확보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자원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2026-04-15 발의

현행법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사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대면 지도 하에 수행되고 있고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의 업무수행은 제약이 있음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과 같이 의료기관 방문이 쉽지 않은 사람들의 보건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환자의 거주지 등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최근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나 의료기사 업무 수행의 장소적 제약으로 인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의 거주지 등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 의료기사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지도’를 통하여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효적인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의2 신설)

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1인)

2026-04-15 발의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국내로 반입되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말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이 제조·수입·판매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로 하여금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지식재산 침해 화장품 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 규제 관련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33조의3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20인)

2026-04-14 발의

고용의 유연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 불안정이라는 위험을 오롯이 개인이 감내하며 처우 면에서도 차별을 받는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분포 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사용자로 하여금 기간제 근로자에게 고용 불안정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동일 직무 정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제4조제3항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20인)

2026-04-14 발의

현행법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을 전제로 지급되나, 산업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해고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 '형식상 자발적 이직'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임

이에 사용자가 피보험자로 하여금 형식상 자발적 이직의 형태로 퇴직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고용보험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안 제58조제2항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2인)

2026-04-15 발의

현행법은 해상풍력발전의 원활한 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해상풍력발전설비가 군사 레이더 전파를 간섭하는 등 군사 작전과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다소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때 국가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책무를 명시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실시계획에 군사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보완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9항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026-04-17 발의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지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3.4%에 불과하며, 국민연금(정규 87.9%, 비정규 37.1%)·건강보험(정규 95.0%, 비정규 53.2%)·고용보험(정규 91.8%, 비정규 53.7%) 가입률을 보이고 있음

또한 퇴직급여(정규 95.6%, 비정규 46.0%)·상여금(정규 89.0%, 비정규 39.7%)·시간외수당(정규 69.1%, 비정규 31.2%)·유급휴가(정규 87.2%, 비정규 39.0%) 수혜율 등 대부분의 처우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같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 임금 등 처우마저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해 근로자 간 계층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커져가고 있는 만큼 노동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불필요한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동일노동이라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이 ‘신분이 보장되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보다 높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인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점임. 이에 단시간 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이를 균등한 처우로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2항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026-04-17 발의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지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3.4%에 불과하며, 국민연금(정규 87.9%, 비정규 37.1%)·건강보험(정규 95.0%, 비정규 53.2%)·고용보험(정규 91.8%, 비정규 53.7%) 가입률을 보이고 있음

또한 퇴직급여(정규 95.6%, 비정규 46.0%)·상여금(정규 89.0%, 비정규 39.7%)·시간외수당(정규 69.1%, 비정규 31.2%)·유급휴가(정규 87.2%, 비정규 39.0%) 수혜율 등 대부분의 처우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같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 임금 등 처우마저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해 근로자 간 계층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커져가고 있는 만큼 노동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불필요한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동일노동이라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이 ‘신분이 보장되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보다 높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인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점임. 이에 **정부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 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0인)**

2026-04-13 발의

현행법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동차 안전기준 일부에 대한 특례와 유상 여객·화물 운송의 조건부 허용을 통해 자율주행 실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핵심 구역이며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반기별로 지구를 지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정부 및 기업의 다양한 실증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해제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지방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지정 및 해제 권한도 보완하여 원활한 실증 추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2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6인)

2026-04-13 발의

현행법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한 통합심의 규정이 미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를 포함하여 경관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등 개별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관과의 협의기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관과의 협의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관련한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2026-04-15 발의

도시가스는 난방, 취사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이를 공급하기 위한 도시가스배관시설은 기반시설에 준하는 중요한 시설임. 그런데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해당 사업의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LP가스나 난방유에 의존하는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분류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별표 제1호)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4/23(목) 14:00	- 안건 심의

2.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재경위	전체회의	4/20(월) 14:00	-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신현송)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과방위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	4/21(화) 10:00	- 공청회 계획서 채택,, 법안 심사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	4/22(수) 15:00	- 디지털크리에이터 보호 및 육성 관련 입법공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4/23(목) 10:00	- 법안 의결, 현안 보고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4/21(화) 10:00	- 법안 심사
	국토법안소위	4/22(수) 10:00	- 법안 심사
기후노동위	기후에너지환경법 안소위	4/22(수) 14:00	- 법안 심사
기후위기특위	탄소중립기본법 심사소위	4/23(목) 10:00	- 법안 심사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4/20(월) 10:00	「국방우주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유용원 의원실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4/20(월) 10:00	담배사업법 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	이인선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4/20(월) 14:00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이학영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4/21(화) 10:00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주가누르기 방지 와 고의상폐 차단을 위한 토론회	이정문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4/21(화) 10:00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증언대회	정혜경·이용우 의원실 등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4/21(화) 14:00	한국 영상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기여 보고서(ECR) 발 간 세미나	임오경·김원이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4/22(수) 10:00	아동·청소년 SNS 규제추세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최형두·박정훈 의원실 등	의원회관 10간담회의실
	4/23(목) 10:30	지식의 평등으로 대체자료 지원 체계 개선 방안 모색 간 담회	김예지 의원실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4/23(목) 14:00	이주민에게 차별적인 국제수가 폐지를 위한 토론회	김남희·김윤 의원실 등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4/21(화)	「Data+」 제2026-6호(통권 제30호) 발간	국회도서관	
	4/21(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7호(통권 제295호) 발 간		
	4/22(수)	「금주의 서평」 제2026-15호(통권 제774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2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4/13(월)	「Data+」 제2026-5호(통권 제29호)	국회도서관	
	4/14(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6호(통권 제294호)		
	4/15(수)	「금주의 서평」 제2026-14호(통권 제773호)		
	4/15(수)	「Data&Law」 제2026-3호(통권 제41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4/13(월)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2026년 정기주주총회 리뷰] 제1호 : 개정상법에 따른 정관 개정 — 소수주주의 이사회 진입 확대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4/14(화)	방송통신(TMT)	정부, 유출사고 예방 위해 ISMS-ISMS-P 인증제도 전면 개편
4/14(화)	자본시장	정부, 모자회사 중복상장에 ‘원칙금지’ 기조 도입 - 미국의 중복상장 규율 및 Pre-IPO 투자 실무와의 비교
4/15(수)	지식재산권	AI 가상인물 표시의무를 도입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 행정 예고
4/16(목)	공정거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과 시사점 - 하도급거래 전 과정 규율 강화와 실무상 영향 -
4/16(목)	방송통신(TMT)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4/16(목)	노동	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발표
4/17(금)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4. 1. - 2026. 4. 14.)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